

교회법

제 2 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제 912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제 913 조

제 1 항.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 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제 2 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 될 수 있다

제 914 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제 915 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에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 916 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 91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 921 조 제 2 항은 보존된다.

제 918 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체를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 예식을 지키면서 집전 되어야 한다.

제 919 조

제 1 항.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제 2 항.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지성한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다

제 3 항.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

제 920 조

제 1 항.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제 2 항.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921 조

제 1 항.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 하여야 한다

제 2 항.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제 3 항.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 되도록 권장된다

제 922 조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 92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느 가톨릭 예법으로든지 성찬 제헌에 참례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 844 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영성체를 할 수 있나

하루에 여러 번 미사에 참여해도 두 번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 하도록 교회는 권장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미사에 이미 참석했는데 아픈 사람에게 봉사하러 갔다가 병자 봉성체에 참여할 경우, 이때 참석한 사람은 미사 중이 아니므로 영성체를 할 수 없다. 봉사를 마친 후 미사에 참석할 경우 그 미사가 두 번째 미사라면 그 미사 중에는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세 번째 미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성체를 영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같은 날 여러 번의 미사에 참석해도 두 번만 영성체 할 수 있다.

(기타)

제 930 조

제1항. 사제가 병약하거나 연로하여 서 있을 수 없으면 전례법을 지키면서 앉아서 성찬 제헌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

제2항. 맹인이거나 그 밖의 병을 앓는 사제는 승인된 어느 미사 경본이든지 사용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제나 부제 또는 올바로 교육 받은 평신도 (성체 분배자)의 도움을 받고서 성찬 제헌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제 944 조

제1항.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곳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에 성체께 대한 공경의 공적인 증거로 공공 도로에서 성체 거동 행렬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성체 거동 행렬의 참가와 품위에 대비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